



의안번호	제4호
------	-----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02. 09.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호
----------	-----

제출연월일 : 2021. 02. 09.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탐정호 출렁다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탐정호 출렁다리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호, 제5호)

- 제1호 중 “관광시설”에 “탐정호 출렁다리”를 추가하고, 제5호에 “탐정호 출렁다리” 정의를 신설

나.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별표 관광시설 이용료 징수기준 중 탐정호 출렁다리 이용료 신설

다. 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3호 및 제8조제1호)

- “선샤인랜드”를 “선샤인랜드, 탐정호 출렁다리”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 12. ~ 2021. 2.1.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선샤인랜드” 를 “선샤인랜드, 탐정호 출렁다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탐정호 출렁다리” 라 함은 탐정호에 조성된 출렁다리와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제3호 및 제8조제1호 중 “선샤인랜드” 를 각각 “선샤인랜드, 탐정호 출렁다리”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관광체육과장	김 영 민
	관광운영팀장	곽 은 주
	담 당 자	이 경 화 (746-8481)

[별표]

관광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 관광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1인기준 / 단위:원)

이용시설			어린이·청소년			일 반		
			개인	단체	감면	개인	단체	감면
선사 인랜드	밀리 터리 체 험 관	서바이벌 체험장	9,000	7,000	5,000	14,000	12,000	7,000
		VR 체험장	15,000					
		스크린 사격장	2,000					
		실내 사격장	2,000					
	1950 스튜디오	관람료 무료						
강경 젓갈전시관			관람료 무료					
비 고			1. 나이구분 - 어린이·청소년 : 만7세이상 만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 일 반 : 만19세 이상 2. 서바이벌 체험장 - 최소 이용 가능인원 : 6명 이상 - 최소 이용 가능 신장 : 130cm 이상 - 1회 이용시간 : 전·후반 각 7분 - 1회 이용시 탄창 2개(180발) 기본제공 - 추가탄창 요금 1개(90발) 1,000원 3. 실내 사격장 : 1회 이용시 탄창 2개(40발) 기본제공 4. 단체기준: 20명 이상 5. 감면 - 논산시민(사이버논산시민, 논산시 명예시민 포함) - 군인·경찰,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논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민 - 감면과 단체이용료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1950 스튜디오(드라마·영화 세트장) 이용료

(단위:원)

구분	유튜브 등 개인방송	방송국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등	비고
이용단위	1시간	1일	1일	1일 기준 : 00:00~24:00
이용료	100,000	1,000,000	2,500,000	

※ 개인방송 이용료가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방송국 이용료를 적용한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탐정호 출렁다리 이용료

(1인기준 /단위: 원)

구 분	일 반	어린이·청소년	유 아
개 인	6,000	3,000	면제
단 체	4,000	2,000	면제

《구분》

- 유 아: 만 7세 미만
- 어린이·청소년: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 일 반: 만 19세 이상
- 단 체: 20명 이상

《요금 관련》

1. 면제(정상요금의 100% 면제)

- 논산시민(사이버논산시민, 논산시 명예시민 포함)
- 만 7세 미만
- 논산시가 주최하는 출렁다리와 관련된 대회 및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감면(정상요금의 50% 감면)

- 군인·경찰,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논산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민
- 감면과 단체이용료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

※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논산사랑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관광시설”이라 함은 <u>선샤인랜드</u>, 강경 젓갈전시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u><신설></u></p> <p>6. ~ 10. (생략)</p> <p>제7조(시설 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그 밖에 <u>선샤인랜드</u>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p> <p>제8조(시설 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시가 주최하는 <u>선샤인랜드</u>와 관련된 대회 및 행사</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선샤인랜드</u>, <u>탑정호 출렁다리</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탑정호 출렁다리</u>”라 함은 <u>탑정호에 조성된 출렁다리와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u></p> <p>6. ~ 10.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설 이용료 감면)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선샤인랜드</u>, <u>탑정호 출렁다리</u> -----</p> <p>제8조(시설 이용료 면제) ----- ----- ----- -----.</p> <p>1. ----- <u>선샤인랜드</u>, <u>탑정호 출렁다리</u>-----</p> <p>2. (현행과 같음)</p>

[별표]

관광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 관광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1인기준 / 단위:원)

관광시설		어린이·청소년			일 반		
		개인	단체	감면	개인	단체	감면
선사인랜드	밀리터리 체험관	9,000	7,000	5,000	14,000	12,000	7,000
	서바이벌 체험장	15,000					
	VR 체험장	2,000					
	스크린 사격장	2,000					
	실내 사격장	2,000					
1950 스튜디오		관람료 무료					
강경 첫갈전시관		관람료 무료					
비 고		1. 나이구분 - 어린이·청소년 : 만7세이상 만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 일 반 : 만19세 이상 2. 서바이벌 체험장 - 최소 이용 가능인원 : 6명 이상 - 최소 이용 가능 신장 : 130cm 이상 - 1회 이용시간 : 전·후반 각 7분 - 1회 이용시 탄창 2개(180발) 기본제공 - 추가탄창 요금 1개(90발) 1,000원 3. 실내 사격장 : 1회 이용시 탄창 2개(40발) 기본제공 4. 단체기준: 20명 이상 5. 감면 - 논산시민(사이버논산시민, 논산시 명예시민 포함) - 군인·경찰,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논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민 - 감면과 단체이용료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1950 스튜디오(드라마·영화 세트장) 이용료 (단위:원)

구분	유튜브 등 개인방송	방송국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등	비고
이용단위	1시간	1일	1일	1일 기준 :
이용료	100,000	1,000,000	2,500,000	00:00~24:00

※ 개인방송 이용료가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방송국 이용료를 적용한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별표]

관광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 관광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현행과 같음)

(1인기준 / 단위:원)

관광시설		어린이·청소년			일 반		
		개인	단체	감면	개인	단체	감면
선사인랜드	밀리터리 체험관	9,000	7,000	5,000	14,000	12,000	7,000
	서바이벌 체험장	15,000					
	VR 체험장	2,000					
	스크린 사격장	2,000					
	실내 사격장	2,000					
1950 스튜디오		관람료 무료					
강경 첫갈전시관		관람료 무료					
비 고		1. 나이구분 - 어린이·청소년 : 만7세이상 만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 일 반 : 만19세 이상 2. 서바이벌 체험장 - 최소 이용 가능인원 : 6명 이상 - 최소 이용 가능 신장 : 130cm 이상 - 1회 이용시간 : 전·후반 각 7분 - 1회 이용시 탄창 2개(180발) 기본제공 - 추가탄창 요금 1개(90발) 1,000원 3. 실내 사격장 : 1회 이용시 탄창 2개(40발) 기본제공 4. 단체기준: 20명 이상 5. 감면 - 논산시민(사이버논산시민, 논산시 명예시민 포함) - 군인·경찰,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논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민 - 감면과 단체이용료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1950 스튜디오(드라마·영화 세트장) 이용료 (현행과 같음) (단위:원)

구분	유튜브 등 개인방송	방송국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등	비고
이용단위	1시간	1일	1일	1일 기준 :
이용료	100,000	1,000,000	2,500,000	00:00~24:00

※ 개인방송 이용료가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방송국 이용료를 적용한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신 설>

□ **탑정호 출렁다리 이용료**

(1인기준 / 단위: 원)

구 분	일 반	어린이·청소년	유 아
개 인	6,000	3,000	면제
단 체	4,000	2,000	면제

《구분》

- 유 아: 만 7세 미만
- 어린이·청소년: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 일 반: 만 19세 이상
- 단 체: 20명 이상

《요금 관련》

1. 면제(정상요금의 100% 면제)
 - 논산시민(사이버논산시민, 논산시 명예시민 포함)
 - 만 7세 미만
 - 논산시가 주최하는 출렁다리와 관련된 대회 및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감면(정상요금의 50% 감면)
 - 군인·경찰,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논산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민
 - 감면과 단체이용료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

- ※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논산사랑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세입
 - 제6조(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탐정호 출렁다리 이용료
- 세출
 - 제4조(시설운영), 제11조(세입 등) : 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입 : 탐정호 출렁다리 이용료를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징수기준에 의거 산출/연간
 - ※ 예상 입장객 수 : 원주시 소금산 출렁다리 입장객 수 688,803명 (2019년 기준)
 - ※ 예상 요금 : 일반 단체 4,000원 적용
- 세출 : 탐정호 출렁다리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 및 인건비 등 산출/연간
 - ※ 인건비 : 최근 2년간(20년, 21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2.2%)적용 (22년~25년)

나. 추계결과

- 세입 : 3,562,997천원
 - 1) 탐정호 출렁다리 이용료 : 2,755,212천원
 - 4,000원 × 688,803명 = 2,755,212천원
 - 2) 시비 : 807,785천원
- 세출 : 3,562,997천원
 - 1) 탐정호 출렁다리 시설 관리운영비 : 375,000천원
 - 공공운영비: 375,000천원 × 1식 = 375,000천원
 - 2) 인건비 : 157,263천원
 - 80,400원 × 6명 × 326일 = 157,263천원
 - 3) 지역화폐 환급비 : 2,755,212천원

4) 지역화폐 발행 및 환전수수료 : 275,522천원

- 2,755,212장 × 95원 = 261,746천원

- 2,755,212,000원 × 0.5% = 13,776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지방비) 100%

3. 작성자

관광체육과장 김 영 민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3,562,997	3,566,457	3,569,993	3,573,607	3,577,301	17,850,355
탐정호 출렁다리 이용료	2,755,212	2,755,212	2,755,212	2,755,212	2,755,212	13,776,060
시 비	807,785	811,245	814,781	818,395	822,089	4,074,295
세 출	3,562,997	3,566,457	3,569,993	3,573,607	3,577,301	17,850,355
탐정호 출렁다리 관리운영비	375,000	375,000	375,000	375,000	375,000	1,875,000
인건비	157,263	160,723	164,259	167,873	171,567	821,685
지역화폐 환급비	2,755,212	2,755,212	2,755,212	2,755,212	2,755,212	13,776,060
지역화폐 발행 및 환전수수료	275,522	275,522	275,522	275,522	275,522	1,377,610
재원 조달	3,562,997	3,566,457	3,569,993	3,573,607	3,577,301	17,850,355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3,562,997	3,566,457	3,569,993	3,573,607	17,850,355
	지방세	807,785	811,245	814,781	818,395	4,074,295
	세외수입	2,755,212	2,755,212	2,755,212	2,755,212	13,776,06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